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안)

2009. 6. 1. 제정
2012. 12. 1. 개정
2013. 1. 1. 개정
2013. 5. 1. 개정
2013. 8. 1. 개정
2013. 9. 1. 개정
2014. 1. 1. 개정
2014. 5. 1. 개정

주무부서 : 대학원지원팀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사운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1>

제2절 위원회

제2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명예학위 포함)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기타위원회) ① 대학원에 중요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학과장 및 시간강사 임면

제4조(학과장) 대학원학과장은 대학의 학과(부)장과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촉절차) 대학원 학과장은 해당 대학장이 대학원장에게 매 학기 개강 전까지 공문으로 추천하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시간강사) 대학원 시간강사의 위촉자격 및 절차는 본 대학교 시간강사위촉 규정에 의한다.

제7조(제출서류) 대학원 강사의 신규 위촉 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학기 개강 전까지 학과장이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임용

가. 강사위촉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라.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 등본 1부

바. 예금계좌 신고서(종합정보시스템) 1부

사. 학과장추천서(자격 미달시 해당자만 제출) 1부

2. 재임용

재위촉 시는 강사 위촉추천서만 제출한다.

제2장 입 학

제1절 입학 및 편입학 전형

1. 일반전형

제8조(학생의 선발)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

② 입학전형은 연 2회 이상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특별전형의 시행에 관해서는 대학원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

제9조(지원 자격)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학칙 제72조(지원 자격)에 규정된 지원 자격을 구비한 자 이어야 한다.

제10조(구비서류) 일반전형과 성적우수자전형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전형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1. 석사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별지 제4호 서식) 1통
- 나.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다. 대학성적증명서 1통
- 라. 학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통
- 마. 직업 군인(장기복무자)은 국방부 장관의 취학 승인서 1통
- 바.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 사. 기관장 취학승인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재직자에 한함)
- 아. 연구소(원)추천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비 재직자에 한함)
- 자. 여권 사본(외국인에 한함) 1통
- 차. 포트폴리오 A4크기(작품사진 8×10인치, 10매~15매)
- 카. 각종 수상경력 관련자료(사본)
- 타. 작품전시회 Catalog 및 기타 자료
 - ※위 차, 카, 타 항목은 조형예술 관련학과 지원자에 한함
- 파. 의학과 지원자는 본교의 해당 주임교수나 학과장 추천서
- 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가.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지원서 직장유무 항목에서 직업 없으므로 표기한 경우에 한함) 1통
<신설 2010.12.1>

2. 박사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별지 제4호 서식) 1통
- 나.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또는 수여예정증명서 1통
-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1통
- 라. 학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통
- 마.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 바. 재직증명서(해당자) 1통
- 사. 연구실적물(별지 제6호 서식) 2편
- 아. 추천서(전공 교수 2명) 각1통
- 자. 직업군인(장기복무자)은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1통
- 차.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 카. 여권 사본(외국인에 한함) 1통
- 타. 기관장 취학승인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재직자에 한함)
- 파. 연구소(원) 추천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비 재직자에 한함)
- 하. 의학과 지원자는 본교의 해당 주임교수나 학과장 추천서
- 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한국어 번역

문을 공증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나.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지원서 직장유무 항목에서 직업 없으므로 표기한 경우에 한함) 1통
 <신설 2010.12.1>

제11조(선발인원) 일반전형의 선발인원은 대학원위원회가 총 정원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일반전형의 방법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전공 구분 없이 공동평가에 의한다.

1. 서류심사

- 가. 학업 및 연구계획서
- 나. 대학 및 대학원 성적
- 다. 추천서
- 라.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2. 심층면접

필답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별력으로 실시하며, 다음 항목으로 평가한다.

- 가. 전공에 대한 지식
-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 다. 전공에 대한 적성
- 라. 지원학과의 학문적 연계성
- 마. 전공 지원동기와 장래 계획
- 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 사. 예·체능계 학과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배점 및 평가) 일반전형 방법에서의 배점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형방법

구 분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계
	서류심사	심층면접	
배 점	200점	100점	300점
심사 기준	① 학업계획서 ② 대학 전 학년 성적 ③ 대학원 전 학년 성적 ④ 추천서	① 전공학문에 대한 지식수준 ② 전적대학(원) 전공과 지원학과의 학문적 연계성과 관련 분야 경력 ③ 학과 지원동기와 졸업 후 장래 계획 ④ 일반교양에 대한 지식수준 ⑤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⑥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	-
과 락 기준	120점미만	60점미만	

2. 예·체능계열 전형방법

계 열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합 계
		서류심사	전공실기	심층면접	
예·체능	실기시험 실시학과	100점	150점	50점	300점
	실기시험 미 실시학과	200점	-	100점	300점

제14조(합격사정) ① 일반전형 합격사정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입학시험의 결과를 사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한다.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결시자(부분결시자 포함)와 과목낙제자(서류심사, 심층면접)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2. 모집단위별 합격선상의 동점자는 서류심사 고득점자, 연소자의 순으로 선발한다.

제15조(신입생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2. 편입학 전형

제16조(전형시기) 편입학 전형은 년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7조(지원 자격) 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석박사학위 공히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학과의 학위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제18조(구비서류)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전형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1통
- 나.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 다. 대학원 재학(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 라. 학업 및 연구계획서 1통
- 마. 재직증명서(해당자) 1통
- 바. 직업군인(장기복무자)은 국방부 장관의 취학 승인서 1통
- 사.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1통
- 아. 여권 사본(외국인에 한함) 1통
- 자. 기관장 취학승인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재직자에 한함)
- 차. 연구소(원) 추천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비 재직자에 한함)
- 카. 포트폴리오 A4크기(작품사진 8×10인치, 10매 ~ 15매)
- 타. 각종 수상경력 관련 자료(사본)

과. 작품 전시회 Catalog 및 기타 자료

※위 카, 타, 과 항목은 조형예술 관련학과 지원자에 한함

(대상학과 : 서양화, 한국화, 공예, 산업디자인, 사진, 조소, 건축미술)

하. 의학과 지원자는 본교의 해당 주임교수나 학과장 추천서

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1통

나. 대학 성적증명서 1통

다.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라. 박사학위 과정 재학(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마. 학업 및 연구계획서 1통

바.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사. 재직증명서(해당자) 1통

아. 연구실적물 2편

자. 직업 군인(장기복무자)은 국방부 장관의 취학 승인서 1통

차.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1통

카. 여권사본(외국인에 한함) 1통

타. 기관장 취학승인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재직자에 한함)

파. 연구소(원) 추천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비 재직자에 한함)

하. 의학과 지원자는 본교의 해당 주임교수나 학과장 추천서

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선발인원) 편입학 전형의 선발인원은 대학원위원회가 총 정원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20조(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편입학 전형의 방법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 구분 없이 공동평가에 의한다.

1. 서류심사

가. 대학 및 대학원 성적

나. 학업 및 연구계획서

다.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2. 심층면접

필답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별력으로 심사하며, 다음 항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전공에 대한 지식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 다. 전공에 대한 적성
- 라. 지원학과와 학문적 연계성
- 마. 전공 지원동기와 장래 계획
- 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 사. 예·체능계 학과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배점 및 평가) 편입학전형 방법에서의 배점과 평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1>

제22조(합격사정) ① 편입학 전형 합격사정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입학시험의 결과를 사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제23조(편입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제2절 연구 생

제24조(연구생) ①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생으로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으로서 교과학점 18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 소지자가 연구생으로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6학점까 지 인정할 수 있다.

제3절 외국인 학생

제25조(지원 자격) 본 대학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학칙 제72조(지원 자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학과에서 별도의 어학능력 최소기준을 요구할 경우, 이를 충족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1>

제26조(외국인 학생의 범위) 본 시행세칙에 의한 외국인 학생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27조(정원)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 제18조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8조(전형시기 및 방법) ① 외국인 입학전형은 연 2회 이상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외국인 학생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선발한다. 단, 입국사증 관계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전화구술심사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제29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본 대학원 각 학위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제3장 제4절에 규정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절 등록·휴학·복학·자퇴·제적·재입학

제30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각 과정의 재학생이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정규등록을 해야 하며, 정해진 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후라도 석·박사학위 과정은 4회 이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8회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하여야 학위 논문제출자격을 얻는다. 다만, 학칙 제76조 3항에 의거 수업연한이 단축된 기간만큼 등록 횟수를 줄일 수 있다.

③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석·박사 학위과정자는 최소 2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하여야 논문제출자격을 얻는다. 단, 교수초빙에 따라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

④ 석사박사학위 과정은 4학기 이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3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는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정규등록 이후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2회 이상 연구등록을 필 해야 하며, 본인의사에 따라 매학기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1차 연구등록은 수료 후 첫 학기, 2 차 연구등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로 하고, 미납된 연구등록금이 있을 경우 2차 연구등록금 기준으로 소급하여 미납된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다음 학위청구논문 제출시 추가로 연구등록을 필해야 한다. <개정 2009.9.11>

⑥ (삭제) <2009.9.11>

⑦ 연구등록 시행은 2008학년도 박사학위과정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또는 2008년 이전 입학한 박사과정 수료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연구등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2007 학년도 3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연구등록 학기는 각 과정별 재학연한 이내로 한다. <개정 2009.9.11>

제31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초 정규등록 시는 수업료를, 연구등록 시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입한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를 적용한다.

② 수업료는 학기별로 납부한다.

제32조(휴학) ① 휴학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증빙서류(별지 제13호 서식)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제 ②항에 규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 장학금을 수혜 받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신설 2014.1.1.>

제33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대학원장의 허가(별지 제14호 서식)를 얻어 복학하

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강 4주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로 한다.

제34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5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또는 누적하여 3회 받은 자 <개정 2010.12.1>
4.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제36조(재입학) ① 자퇴 및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학 연한내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별지 제16호 서식)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1호 및 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자 중 복학기간 만료로 제적되어 1년 이내(군 입대기간 제외)에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을 대체 인정하며 재입학금만 부과한다.

④ 징계 및 재학연한의 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⑤ 단, 제적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2. 12. 1>

제37조(전공변경) 전공을 변경코자 하는 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3차 학기이내로 동일학과 전공 중에서 대학원장의 허가(별지 제17호 서식)를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수업·장학·논문 제출 자격시험

제1절 수 업

제38조(수업) 수업은 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수업연한) 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각 교과목 취득성적이 95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학칙 제76조에 의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총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경우 최대 1년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때, 석사과정, 박사과정 별로 구분하여 각각 6개월의 수업

연한을 단축하되,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 가능 학기에 적용한다. <개정 2009.9.11, 2010.12.1>
제40조(재학연한)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9년 이내로 하며, 휴학기간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2. 1> 다만, 외국인은 재학연한을 두지 않는다. ① 재학연한기간 중 출산한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 1회당 1년의 재학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8. 1>.
제40조의2(특례재입학)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특례재입학의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1]

1. 교과과정

제40조의3(세부전공) ① 각 학과에는 2개 이상의 세부전공을 편성하되, 세부전공당 평균 소속 전임교원의 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 이상으로 세부전공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부전공은 학문분야 분류체계와 가능한 일치하도록 편성하되, 학과별로 모든 전공분야를 모두 포괄하기 보다는 세부전공분야의 특성화를 꾀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1차학기 말까지 세부전공배정요청서(별지 서식 제49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1]

제41조(교과목) ① 교과목은 전공과목, 계열별 공통과목, 자유선택과목으로 나눈다.

② 전공과목은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의 교과목을 말한다.

③ 계열별 공통과목은 2개학과 이상이 공동으로 개설하여 과목코드, 담당교수, 강의시간 및 요일이 같은 과목을 말한다.

④ 자유선택과목은 타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말한다.

제42조(학점수) 교과목은 한 교과목당 3학점, 전공연구는 2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상 교과목당 학점을 달리 정해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2.1>

제43조(교과과정) ① 석박사 학위과정이 있는 학과에서는 과정 간에 중복된 과목을 개설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교과목 명칭을 분리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② 각 학과의 매 학기 개설과목은 석·박사 공통과목을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한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1>

제44조(전공과목의 편성) ① 전공과목은 공통필수과목, 세부전공별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통필수과목은 학과사정에 따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통필수과목 및 세부전공별 전공필수과목(이하 ‘필수과목’이라 한다)은 단일과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4과목 이내의 필수과목 군에서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③ 필수과목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각각 6학점 이상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④ 석·박사 공통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도 되나,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필수과목은 박사과정에서

이수해야할 필수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전공과목의 편성은 매 2년마다 각 학과의 교수회의를 거쳐 학과장이 편성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공선택과목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학기 시작 전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선택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과목 편성에 대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면개정 2010.12.1]

[제목개정 2010.12.1]

[적용 2011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제45조(교과과정 변경) 설정된 교과과정은 결정된 후 2년 이내는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전공연구) ① 전공연구 과목은 전공분야의 심층연구와 논문지도를 목적으로 하며 지도교수는 연구과제 수행, 세미나, 전공분야의 심층적 보충강의 및 실험·실기 등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② 전공연구 과목은 학과내규로 분류된 전공분야에 따라 논문지도교수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논문지도 및 연구수행의 효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전공분야의 교수 또는 타대학 교 교수나 연구기관의 조교수급 이상 연구원과의 공동운영도 가능하며,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학제간 연구의 형태로 타과 교수와 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의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전공연구 과목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의 위임을 받은 교수가 전공연구 과목을 지도할 수 있다.

제47조(계열별 공통과목) 계열별 공통과목은 각 계열에 따라 2과목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제48조(학기당 교과목 개설상한) ① 각 학과가 학기당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별지 제18호 서식)의 학점 상한은 직전학기 학과별 전임교원수의 2분의 1 또는 재학생 수의 3분의 1 중 큰 수에 따라 설정하되, 학기당 6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수과목 개설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임교원수와 재학생수에 상관없이 학기당 12학점까지는 개설을 보장한다.

② 교육의 질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학과별 매학기 개설과목 중 50% 이상을 학과 전임교수가 담당하여야 한다.

③ 영어강의A 교과목과 계열별 공통과목은 교과목개설 학점상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4.1.1>

제49조(타학과 개설과목의 수강학점 상한) 타학과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은 학과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0.12.1>

[제목개정 2010.12.1]

제50조(타학과 개설과목의 전공과목학점 인정) 자유선택 과목이라도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1조(교과학점 담당상한) 교강사 1인의 담당과목은 전공연구 과목을 제외하고 연간 6학점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 다만, 학과간 협동과정에서 담당한 교과학점은 예외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한을 초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9.11>

제52조(수료학점) ① 교과학점은 석사학위과정 30학점, 박사학위과정 60학점(석사학위과정 취득학점

포함),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60학점(단, 자연·공학계열은 57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의약학과 석·박사과정, 음악·한국음악학과 석사과정(박사과정 제외) 등 전공연구과목을 개설하지 아니하는 과는 석사학위과정은 33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63학점 이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63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1>

② 전공연구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학점, 박사학위과정 4학점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4학점(단, 자연·공학계열은 6학점)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09.9.11>

③ 석사학위과정 예체능계열은 대학원 교양영어를 이수해야 한다. <삭제 2013. 8.1>

④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또 다시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30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3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교과학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없다. (간호학과의 전문 간호사과정(노인전문, 종양전문) 전공의 경우, 10학점까지 이수가능) 다만,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3 이상인 경우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으며(단, 전공연구 과목을 개설하지 아니하는 학과는 2회까지 가능),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0 이상인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0.4.17.> <일부개정 2014.5.1>

② 학과(부) 및 전공을 달리하여 입학한 학생은 학과장의 지도에 따라 대학원 재학 중 하위과정에서 선수과목(보충과목)을 수강하되, 선수과목 및 전공연구 과목을 합하여 한 학기 15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③ 전공연구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3, 4차 학기 중에 전공연구 I 을, 박사학위과정에서는 3차 학기에 전공연구 II 를, 4차 학기에 전공연구 III 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7차 학기에 전공연구 II 를, 8차 학기에 전공연구 III 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중 자연·공학계열은 6차 학기에 전공연구 I 을, 7차 학기에 전공연구 II 를, 8차 학기에 전공연구 III 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1>

④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 예정학기 직전 학기에 전공연구 II 를, 수료예정학기에 전공연구 III 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중 자연·공학계열은 수료 예정학기의 전전 학기에 전공연구 I 을, 직전 학기에 전공연구 II 를, 수료예정학기에 전공 연구 III 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1>

제54조(인정학점) 본 대학원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55조(편입학 학점인정) 석·박사학위과정에 편입한 자는 전적 대학원의 교과목 중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교수 초빙에 따라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을 한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

제56조(과정별 학점인정 범위) ① 박사학위과정의 학과에 입학한 자는 과목중복이 없는 한,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학점(단, 교과목이 아닌 논문지도 관련 과목은 제외)을 3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학과는 33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학과(부) 및 전공을 달리해서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소속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석사 15학점(또는 5과목), 박사 9학점(또는 3과목)을 추가이수하거나 대체인정(별지 제20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 및 특수대학원,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동종전공(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일지라도 본 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선수과목이 석·박사 공통과목인 경우, 선수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중복이수 또는 인정받을 수 없다.

④ 석사학위과정에 대한 선수과목은 학부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 중 10개 이하의 과목으로 편성하고, 박사학위과정에 대한 선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 중 6개 이하의 과목으로 편성한다. 다만, 세부전공별로 선수과목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수과목 개설기준은 세부전공별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1>

⑤ 석사학위과정에 대한 선수과목 편성시 편성된 선수과목 중 1개 이상을 해당학과 전체에서 또는 세부전공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이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10.12.1>

[제56조 제4항 및 제5항, 적용 2011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제57조(과정간 학점인정) ① 학부 6차 학기를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3.3이상인 재학생으로서 본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선 이수 학점은 한 학기에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1.>

② 1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을 3학점 이상 초과하여 이수한 대학원 이수학점의 경우에는 대학원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시행 2014.3.1.>

제58조(학점 교환제) ①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본교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당 1과목, 총 2과목에 한하여 해당 학과장의 승인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수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과장의 승인과 양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고, 재학 중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칙 제80조에 따라 국외 대학원과의 공동 및 복수 석·박사 학위수여로 협정관계에 있는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원에서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의 1/2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의 허락을 얻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제59조(교과이전) 본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석·박사 학위과정 각 6학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9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을 이전할 수 있다.

제60조(이전의 인정절차) ① 교과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이전 신청서와 전적 대학원의 성적 증명서를 첨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교과이전 신청은 대학원장의 최종 인정에 따라 이를 학적부의 성적에 반영한다.

제61조(수료인정 및 시기) ① 석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서 4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교과학점 30학점 이상(의약음악한국음악학과는 33학점)과 전공연구 2학점(의약음악한국음악학과는 제외)을 취득

한 자에게는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서 4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교과학점 60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이상과 전공연구 4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박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의, 약학과는 63학 점(전공연구 제외) 이상 취득한 자에게 박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③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재학생으로서 8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교과학점 60학점(단,자연·공학 계열 은 57학점) 이상과 전공연구 4학점(단, 자연·공학계열은 6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석·박사 학위 통 합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의, 약학과는 63학점(전공연구 제외) 이상 취득한 자에게 석·박사 학위통합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신설 2009.9.11>

④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수료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9.9.11>

제62조(수강과목제한)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에서 3과목, 박사학위 과정에서 3과목,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6과목을 초과하여 수강 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한다.

제63조(수강생수) 수강생이 2명 이하인 교과목은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수과목과 영어강 의A 교과목은 예외로 하고, 석·박사를 구분하여 재학생수가 5명 이하거나 학과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설강 할 수 있다. <개정 2010.4.17., 2014.1.1.> 단, 예 체능계열 실기관련 과목의 경우, 3시수 과목 수강생이 1명일 경우 1시수, 수강생이 2명일 경 우 2시수로 조정할 경우 폐강의 예외를 적용한다. <개정 2014.5.1.>

제64조(보충수강) 논문 지도교수는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이 논문 제출에 필요한 수료학점을 취득 하 였다 하더라도 논문지도상 특정과목의 보충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6학점 범위 내에서 5차 및 6차 학기에 그 보충과목의 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65조(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 ① 본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7등급으로 하며,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등 급	취 득 점 수	평 점	100점 만점 기준 환산점수
A ⁺	95점 이상	4.5	100
A	90 ~ 94	4.0	94.28
B ⁺	85 ~ 89	3.5	88.57
B	80 ~ 84	3.0	82.85
C ⁺	75 ~ 79	2.5	77.14
C	70 ~ 74	2.0	71.42
P	PASS	없음	없음
F	0 ~ 69	-	-

② A⁺ 등급의 부여는 과목별 수강생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공연구와 수강인원 3 명 이하인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전면개정 2010.12.1]

제65조의2(국제화선도학과)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강의A 교과목을 2년간 10개이상 개설하는 학과를 국제화선도학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 개

정 2014.1.1>

- 제66조(해외 및 국내 연수 학점인정)** ① 국내연수는 50시간 당 1학점으로 인정하며 150시간 이상 이수 시에는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 ② 해외연수는 30시간 당 1학점으로 인정하며 90시간 이상 이수 시에는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 ③ 국내 및 해외연수에 대한 학점인정은 재학 중 최대 3학점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4.1.1.]

제2절 장학금·포상 및 징계

제67조의1(대학원장학금) 대학원 장학금의 지급에 대하여서는 9-8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하며 제3장 일반대학원 장학금에 따른다. (신설 2012.2.1.)

제67조의2(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1]

제67조의3(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수업 및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각종 제 증명서를 위조, 조작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방조한 자
4. 학교 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5. 학교 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6. 학내에서 절도, 폭력, 폭언, 성희롱, 성폭력을 행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자
7. 학내 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여 불법유출, 파괴, 변경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8. 시험 부정행위자
9.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관련 자
10. 기타 학칙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시 해당 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대학원에서 직접 징계를 방의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1부
2. 본인진술서 1부(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

③ 기타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1]

제67조의4(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① 제74조의3 제1항 8호에 해당하는 시험 부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 또는 답안지에 성명을 바꾸어 적은 자

2. 시험장을 문란하게 한 자
 3.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4.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6. 책 또는 노트를 훑쳐본 자
 7. 남의 답안지를 보여 주도록 강요한 자 또는 남의 답안지를 훑쳐본 자 및 보여준 자
 8. 쌍방이 서로 상의한 자
 9. 기타 부정행위
- ②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징계내용은 중간, 수시, 기말시험 및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등 모든 시험에 적용한다.
- ④ 시험 부정행위자는 소속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과장이 징계하고 대학원장에게 통고한다. 다만, 근신 이상의 징계는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0.12.1]

제67조의5(연구부정행위) ①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는 연구과제, 연구발표, 수업과제물 등 모든 유형의 연구에 적용된다.

② 기타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진실성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1]

제3절 대학원 중앙 우수논문 시상

제68조(중앙 우수논문제) 대학원의 내실 있는 학문풍토를 이루며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대학원생의 우수논문을 선정·시상하는 중앙 우수논문제를 시행한다.

제69조(심사대상) ① 재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학술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 공동으로 연구된 논문의 경우 모든 공동연구자가 반드시 본교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이어야 한다.

③ 우수논문 시상 일을 기준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학위논문으로 제출되었던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0조(심사부문) 우수논문은 재학생의 전공학문 분야를 기준으로 인문사회 부문과 이공학 부문으로 양분하여 심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제71조(구비사항) 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총학생회를 통해 대학원장에게 매년 5월에는 참가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매년 10월에는 완성된 학술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심사위원회) ①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논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한다.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전공학문분야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의 소속 학과가 모두 달라야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

제73조(심사절차)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요청된 각 논문의 연구계획서 심사, 구두발표가 포함된 본 논문심사 등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 ② 위원장은 각 위원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대학원장에게 최종결과를 보고한다.
- ③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심사 요청된 논문 중에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각 3편,佳作 각 5편을 선정한다.

제7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5조(인준) 대학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를 인준한다.

제4절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제76조(종류) 학칙 제84조에서 정한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2. 종합시험

제77조(시기)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은 연 2회, 매 학기 초 1개월 내에 실시한다.

제78조(응시자격) 외국어 시험의 응시는 1차 학기부터 가능하며, 종합시험의 응시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2차학기 이상 수료 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4차학기 이상 수료 후, 해당 시험과목을 이수 완료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다만, 예·체능계열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외국어 시험 중 영어시험의 응시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교양영어 과목을 이수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삭제 2013. 8.1>

[적용 2011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제79조(응시절차) 외국어 및 종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외국어시험의 목적) 외국어시험은 학생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81조(외국어시험 과목) ①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며, 외국인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추가한다.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학과와 응시자의 연구 분야의 성격상 기타의 외국어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박사과정의 경우 학과에 따라 제2외국어 시험을 부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영어강의A 개설과목을 B학점 이상의 성적으로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외국어시험대체인 증서를 제출할 경우 외국어시험(영어, 한국어)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1>

③ 외국인 학생 중 모국어가 영어권 유학생인 경우 영어시험은 면제한다. <신설 2012. 12. 1>

제82조(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연구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83조(종합시험과목) ①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 과목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과목은 4과목으로 하며, 응시과목의 결정은 학과내규로 따로 정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모두 2과목은 반드시 공통필수과목 또는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중에서 택해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서 이미 응시한 필수과목은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대상 필수과목이 될 수 없다.

② 학칙 제80조에 따라 국외 대학원과의 공동 및 복수 석·박사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과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종합시험과목의 대상을 달리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0.12.1]

[적용 2011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제84조(시험위원) ① 외국어 시험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종합시험 위원은 해당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공통필수과목에 대한 종합시험은 시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동위원회에서 시험문제를 공동출제하고 공동채점하여야 한다. 시험운영위원회의 구성요건은 학과내규로 한다.

[전면개정 2010.12.1]

제85조(합격기준) ①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성적은 100점 만점에 외국어는 60점 이상, 종합 시험은 과목별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외국인학생은 추가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영어시험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계절 학기에 개설되는 별도의 영어강좌를 수강하여 합격하거나, TOEIC 780점, TOEFL 530점(CBT 233점, IBT 91점), TEPS 664점 이상(단, 어학시험 대체인정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함) 취득하여 어학시험 대체인정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체하려면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또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350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한국어능력시험 대체인정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④ 종합시험에 불합격시 불합격 과목 각각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응시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과 전체교수회의의 결정으로 두 번째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0.12.1]

[제84조 제4항, 적용 2011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제86조(시험방법) 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공히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학 위 수 여

제1절 학위수여

제87조(학위수여) 명예박사 학위를 제외한 각 학위는 제52조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제75조 내지 제 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학위별 각종 논문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학위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다만, 학칙 제80조에 따라 국외 대학원과의 공동 및 복수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한 학과의 경우, 협정을 체결한 국외 대학원에서 본교 복수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석사학위 수여에 대해서는 협정관계에 있는 국외 대학원의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시 학과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학위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제88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학칙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1항과 같다.

1. 석 사 학 위

제89조(학위수여요건) 석사학위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제90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자에게 수여한다.

제90조(논문제출 자격) 석사학위 청구 논문(이하 ‘석사학위논문’ 이라 칭한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제출시 재학연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 후 군 입대로 논문제출 기한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4. 각 학과내규에서 요구하는 개별 요건을 충족한 자 <신설 2010.12.1>
5.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을 이수하고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신설 2010.12.1>

[제89조 제5호, 적용 2011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제91조(논문제출 절차)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제출승인서(별지 제28호 서식).....1부
2. 석사학위 청구논문(예비 심사용 : 소속 학과에 제출).....3부
3. 학부 졸업증명서 및 석사과정 성적증명서.....각1부
4. 연구실적인정서(별지 제29호 서식)..... 1부

제92조(논문작성 언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 할 수도 있다. 다만, 논문은 국문과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3조(논문의 분량과 제책) 별도의 제책기준에 따른다.

2. 박사 학 위

제94조(학위수여 요건) 박사학위는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사내규 제98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자에게 수여한다.

제95조(논문제출 자격) 박사학위 청구논문(이하 ‘박사학위논문’ 이라 칭한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3. 국내외 전문학술지(인문·사회·예체능계열의 경우 학진 등재후보지 이상, 자연·공학·의학계열의 경우 JCR)에 단독, 주저자, 또는 교수를 제외한 제1저자로 1편의 논문을 게재한 자.(단, 교수업적평가제 연구업적평가 기준에서 계열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9.9.11>
4. 각 학과내규에서 요구하는 개별 요건을 충족한 자 <신설 2010.12.1>
5.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제출시 재학연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 후 군 입대로 논문제출 기한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6. 논문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한 자 <신설 2010.12.1>
7.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을 이수하고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신설 2010.12.1>
[제94조 제7호, 적용 2011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제96조(논문제출 절차)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제출승인서(별지 제28호 서식).....1부
2. 박사학위 청구논문(예비 심사용 : 소속 학과에 제출).....5부
3. 연구실적 인정서(별지 제29호 서식).....1부
4. 석사학위증명서 및 석.박사과정 성적증명서.....각1부

제97조(준용기준) 제91조 및 제92조 규정을 박사학위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절 논문프로포절 심사 <신설 2010.12.1>

1. 석 사 학 위 <신설 2010.12.1>

- 제97조의 2(심사방법)** ① 석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학과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② 학과장은 본논문심사 이전에 논문심사계획서(별지 제30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1]

2. 박 사 학 위 <신설 2010.12.1>

- 제97조의 3(심사위원회)** ①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수 4인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학과장이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5. 1>
③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12.1]

- 제97조의4(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각 학과별로 공개발표를 하여야 하고, 심사 일정 및 장소를 반드시 학과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이 관련된 질의를 할 수가 있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 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며, 수정·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심사요지(별지 제31호 서식)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이전 학기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⑥ 논문 프로포절 심사 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본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

- 제97조의5(평가방법)** 논문 프로포절 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본조신설 2010.12.1]

- 제97조의6(재심사)** 논문 프로포절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1.]

제3절 논문심사

1. 석 사 학 위

제98조(심사위원회) 석사학위 청구논문이 접수되면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공동지도인 경우에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9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자격은 제127조에 준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1>

④ 외부 심사위원은 1인까지만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12.1>

[제98조 제4항, 적용 2011.9.1부터]

제100조(심사위원 교체금지) 제97조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1조(심사방법) 논문심사는 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반드시 학과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삭제) <2010.12.1>

2. 본 심사

가.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고, 심사상 필요할 경우에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분 또는 모형, 기타 재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를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논문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1>

제102조(평가방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103조(재심사) ①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불합격 후 재학연한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04조(심사의 연기) 예비심사결과 논문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본 심사를 보류하고 학과장 명의로 심사연기 요청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5조(심사결과 보고) 논문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종합심사보고서(별지 제34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논문최종작성) 논문 제출자는 제책 이전에 반드시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박사 학 위

제107조(심사위원회) 박사학위 청구논문이 접수되면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공동지도인 경우에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8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 자격은 제127조에 준한다.

②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학과장이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5. 1>

③ 심사위원은 학기당 2편을 초과하여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⑤ 5인의 심사위원 중 최소한 1인 이상은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원칙적으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1>

⑥ 논문 심사위원회에는 해당 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 중 반드시 2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12.1>

[제107조 제6항, 적용 2011.9.1부터]

제109조(심사위원 교체금지) 제106조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0조(심사방법) 논문심사는 2회 이상,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한다. 논문심사일정 및 장소는 반드시 학과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삭제) <2010.12.1>

2. 본 심사(1,2차 심사)

가. 심사 상 필요할 때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분 또 모형, 기타재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논문 프로포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를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논문 합격여부를 판정(별지 제33호 서식)한다.

다.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라. 1차 심사는 반드시 각 학과별로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당해학기 내 완성 가능성을 판단한다. <개정 2010.12.1.> [적용 2011.9.1부터]

제111조(평가방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 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112조(재심사) ①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13조(심사기간)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8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4조(심사의 연기) 본 논문 1차 심사 결과 논문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본 심사 보류하고 학과장 명의로 심사 연기요청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제115조(심사결과보고)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별지 제34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6조(논문최종작성) 논문 제출자는 제책 이전에 반드시 논문심사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학위의 수여와 취소

제117조(수여의결 보고) ①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의 수여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석사학위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 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③ 박사학위는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 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118조(수여학위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상관없이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절 명예박사 학위

제119조(목적)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현저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120조(학위수여 의결)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121조(학위종별)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 학위의 종별은 학칙 제8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위수여자의 공헌 또는 공적에 따라 대학원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122조(학위등록)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명예 박사학위 등록 대장에 등재한다.

제123조(학위기 수여) 명예박사 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124조(수여일자) 명예박사 학위는 개교기념일과 졸업식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위원회가 다른 의결을 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25조(수여학위의 취소)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취소한다.

제5장 학 위 논 문

제126조(논문지도교수배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학생은 해당 학과장의 승인 하에 1차 또는 2차 학기에 논문지도교수배정서(별지 제35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1. (삭제) <2010.12.1>
2. 학과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인의 교수가 공동지도할 수 있다.
3.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의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학과 교수 1인과 협력연구소(원)위원 1인으로 하여 공동 배정한다.
4. 지도교수의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과 논문지도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지도교수별로 석·박사학위과정생을 모두 합하여 연간 8인까지만 신규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1>

제127조(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별지 제36호 서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단, 박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한 후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후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있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소속학과 학과장 또는 현 지도교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① 항의 변경원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논문지도교수 변경 탄원서를(변경할 지도교수를 경우) 대학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3. 9. 1>

제128조(지도교수 자격) ①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석·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직전 2년간의 연구업적이 인문·사회계열 소속 교원의 경우 학진등재(후보)지 2편 이상, 자연·공학·의학(기초)계열 소속 교원의 경우 JCR 1편 이상, 간호학과 소속 교원의 경우 학진등재(후보)지 3편 이상, 의학(임상)·예체능계열 소속 교원의 경우 학진등재(후보)지 1편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공저의 경우도 1편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0.12.1>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의 전임강사, 대우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연구전담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과 교수 1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제129조(논문지도) 박사학위 논문지도 교수는 한 학기에 논문 2편을 초과하여 지도 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0조(학위논문 제출부수) 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위청구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책본을(석사·박사 공히 하드카바 4부)심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제출논문 책본 중 1부에는 반드시 심사위원의 인정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학위논문등록) 학위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위청구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http://www.lib.cau.ac>

kr)접속하여 등록하고, 논문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32조(학위논문작성 및 제책) 학위논문작성 및 제책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학위논문 작성 및 제책기준 참조)

제6장 학과간 협동과정

제133조(설치학과 및 전공) 학과간 협동과정의 설치학과와 전공은 학칙에 의한다.

제134조(운영위원회) 본 과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위과정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5조(위원회의 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참여 학과의 학과장이 된다.

제136조(위원회위원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7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본 과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출강 및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3. 본 과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학연·산 협동과정

제139조(설치학과 및 전공)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학과 및 전공은 학칙에 의한다.

제140조(운영위원회) 본 과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단위과정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141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출강 및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3. 본 과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2조(위원회의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본 대학교의 관련 학과장 중에서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와 각 연구원(소)의 선임 또는 책

임연구원 중에서 각 연구원(소)장이 추천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을 총장이 위촉하며, 각 분
과별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43조(위원회위원임기) ① 본 대학교 측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각 연구원(소)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
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는 수시
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여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5조(재정) 이 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재정운영은 운영
위원장 책임 하에 한다.

제8장 대학원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제146조(자격) 자연계 석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박사과정 입학확정자인 병역미필자로서 선발시험에 합
격하고 만 30세 미만인 자로 한다<개정 2012.8.1.>

제147조(임용절차) 임용은 본인의 지원과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제148조(임용기간) 임용기간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재학기간으로 한다.

제149조(임용시기) 임용시기는 매 학기 초로 한다.

제150조(복무 및 혜택) ① 전문요원의 소속은 대학원으로 하고 해당 학과장의 감독을 받아 연구 활동
에 종사한다.

② 해당 학과장은 전문연구요원에게 연구 과제를 부여하며, 연구요원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임
용기간 만료 15일전에 연구결과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해당 학과장은 출근부를 비치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④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동시에 박사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허가되며, 수료 후 전문연구기관 3년
근무를 병역필로 처리한다.

제151조(자격상실) 전문연구요원이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에는 복무지 이탈로 간주하여 전문연구요원
임용을 취소하고, 총장은 이를 병무청에 즉시 통보한다.

제152조(보수) 전문연구요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53조(기타) 대학원 전문요원 운영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학·석사학위 연계과정

제154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의 모집단위는 석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 학 과로 한다. 다만, 학과의 사정에 따라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의 모집인원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로 한다.

제155조(지원 자격 및 신청) 학·석사학위 연계과정 지원 자격 및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6차 학기까지 총 106학점(문과대, 자연대, 법대는 6차 학기까지 116학점, 건축학 부 건축학전공 5년제는 8차 학기까지 총 144학점)이상 취득하고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 평균 평점이 3.3 이상인 자 로 한다. 단 6차(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년제는 8차) 학기 이후 계절학기 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학사학위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단, 학과간 협동과정은 제외한다.
4. 복수지원은 불허하며, 해당 대학원 1개학과(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5. 편입생도 1~4항의 자격을 충족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6.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서는 학부 소속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제출서류) 학·석사학위 연계과정 지원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157조(전형방법) ①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대학(원)학과(전공)별로 정하 여 전형할 수 있다.

②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의 전형은 6차(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년제는 8차)학기말에 실시한다.

③ 최종 선발자 발표는 7차(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년제는 9차) 수강신청기간 직전에 한다.

제158조(수업연한)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년제는 6년)으로 하 며,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초과한 자는 중도포기 자로 간주한다.

1. 학사학위과정 3.5년(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년제는 4.5년)
2. 석사학위과정 1.5년

제159조(수강신청) ①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해당 대학원 전공과목 중 6학점까지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부에서 수강신청한 대학원 선이수 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며, 석사학위과정 졸업이수 학점으로도 인정한다.

제160조(학부졸업, 대학원 입학 및 혜택) ①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학부 졸업이수학점 은 124학점(문과대, 자연대, 법대는 134학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년제는 154학점)으로 하며, 졸업 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학부 졸업과 동시에 해당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각 학과의 조교 채용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161조(등록 및 취소) ①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해당 대학원에 신입생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는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대학원 입학 이전에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학부 졸업이 인정되지 않고 8차 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년제는 10차 학기)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속 단과대학의 졸업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첫 학기 휴학시 합격을 취소한다.

⑤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차 학기 내에 수료학점 미 취득자는 학점등록을 불허하며, 4차 학기 정규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2조(행정절차 및 사무분장) 학석사학위 연계과정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 지원서교부 및 접수, 선발자 결정 및 최종합격자 명단 통보

2. 각 계열 행정실 : 학적 변동 관리 <개정 2013. 1. 1>

3. 학과 : 지원자 전형

제10장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제163조(용어의 정의) ①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석사과정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② 중도진입형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전형(이하 “중도진입형 전형”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 석사과정 2학기 이수 및 교과학점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동일학과 동일전공에 한하여 지원을 받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③ 신입생선발형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전형(이하 “신입생선발형 전형”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 신입생 선발과 동일한 절차로 모집 지원을 받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신설 2012.8.1.)

제164조(설치대상)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학과 중에서 통합과정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165조(지원 자격 및 선발시기) 1. 중도진입형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신 입학한 자로서 2학기 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2차 학기말에 지원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지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
- ③ 선발시기는 매학기 2월과 8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2013년 8월까지 시행 후 중단

2. 신입생 선발형

-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신입학 자격과 동일한 자격으로 한다.
- ② 석사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지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
- ③ 선발시기는 전·후반기 입학전형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시행한다.
- ④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실시(신설 2012.8.1.)

제166조(제출서류) 제10조(구비서류) 일반전형 석사학위과정 서류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도진입형 지원자는 석사과정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한다.<개정 2012.8.1.>

제167조(선발원칙 및 절차) ①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 20%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학생선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은 통합과정 설치학과에서 내규로 정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168조(수업연한)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칙 제76조 제3항에 의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9조(이수학점) 통합과정 이수학점은 이미 취득한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64학점(교과 60학점 및 전공연구 4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공학계열의 경우 63학점(교과 57학점 및 전공연구 6학점)이상, 전공연구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의, 약학과는 교과 6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1>

제170조(박사과정 인정) ①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 ② 제1항의 박사과정 인정 자에 대한 학적관련 제 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발급한다.

제171조(과정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①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는 학칙 제86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 ②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

제172조(학사관리) ① 통합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학과는 석사와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단일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과과정의 이수, 학위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 등 제반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을 적용한다.

제11장 3개 대학원(중앙, 숭실, 인하) Consortium

제173조(취지) 유능한 교수의 상호 활용, 시설, 실험기구 및 도서의 공동 이용, 학문의 개방과 상호협동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승실·인하대학교의 3개 대학원 간 대학원 협동체를 형성하여 공동강의 및 학점교환제를 실시한다.

제174조(학점교환) ① 각 대학교의 대학원 학생은 대학원 간에 협의된 교과목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매 학기당 교환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환과목은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으로서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속 대학원의 당해학기 개설 교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제175조(수강신청) ① 본 제도에 의해서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려는 대학원 학생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원의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학점교환제에 의해서 개설된 강좌의 수강을 결정한다.

② 학점교환제에 의하여 학점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 1부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환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학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사유서 1부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해당 강좌가 개설된 대학원에서 수강한다.

제176조(학생의 권리 및 의무) ① 학점교환제에 참가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77조(기타) 본 시행세칙에 언급하지 않은 기타 학무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제12장 보 칙

제178조(준용)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9.6.1)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시행세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대학원 학사내규」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본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면 종전의 조항을 같음하여 본 규정 또는 본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9.11)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시행세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대학원 학사내규」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본 시행세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면 종전의 조항을 갈음하여 본 시행세칙 또는 본 시행세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예외) 제39조 2항, 제52조 1항 내지 2항, 제53조 1항 및 3항 내지 4항, 제61조 3항 내지 4항, 제176조 중 석·박사학위 통합과정과 관련된 규정과 제69조와 제102조 중 3호는 2010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적용되고, 2009학년도 후반기 입학자까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0.3.24)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 제107조 제6항, 제100조, 제109조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예외) 제44조, 제56조 제4항 및 제5항, 제77조, 제82조, 제84조 제4항, 제89조 제5호, 제94조 제7호는 2011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10년 후반기 입학자까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2.2.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조항 제66조~73조는 생략하며 대학원 장학금의 지급에 대하여서는 제66조1항에 따른다. 이후 조항에 대해서는 조항 번호를 변경한다.

부 칙 (2012.8.1)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1)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1)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8.1)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1)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1)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5.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